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313호
세운재정비촉진지구 정비구역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365호(2006. 10. 26)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107호(2009. 3. 19.)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119호(2014. 3. 27.)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0조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고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0조제7항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합니다.

2024년 6월 27일
서울특별시장

I. 정비구역의 해제
1.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해제

구분	정비구역명		위 치	면 적	비 고
기정	2구역	2-1~35구역	종로구 장사동 67번지 일대	38,962.6	35개 구역
변경	해제				
기정	5구역	5-2, 5-4~11구역	중구 산림동 82-5번지 일대	30,956.1	9개 구역
변경	해제				
기정	6-1구역	6-1-1~32구역	중구 충무로4가 12-1번지 일대	44,390.2	32개 구역
변경	해제				
기정	6-2구역	6-2-1~7, 6-2-9~23, 6-2-25~45, 6-2-47~50구역	중구 충무로4가 125-3번지 일대	57,299.8	47개 구역
변경	해제				
기정	6-3구역	6-3-5~9구역	중구 예관동 17-3번지 일대	2,293.2	5개 구역
변경	해제				
기정	6-4구역	6-4-1~16, 6-4-18~20구역	중구 인현동2가 136-2번지 일대	21,913.9	19개 구역
변경	해제				

2.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해제 사유

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0조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정비구역을 해제함.

II. 위치도 및 관계도면 : 붙임 참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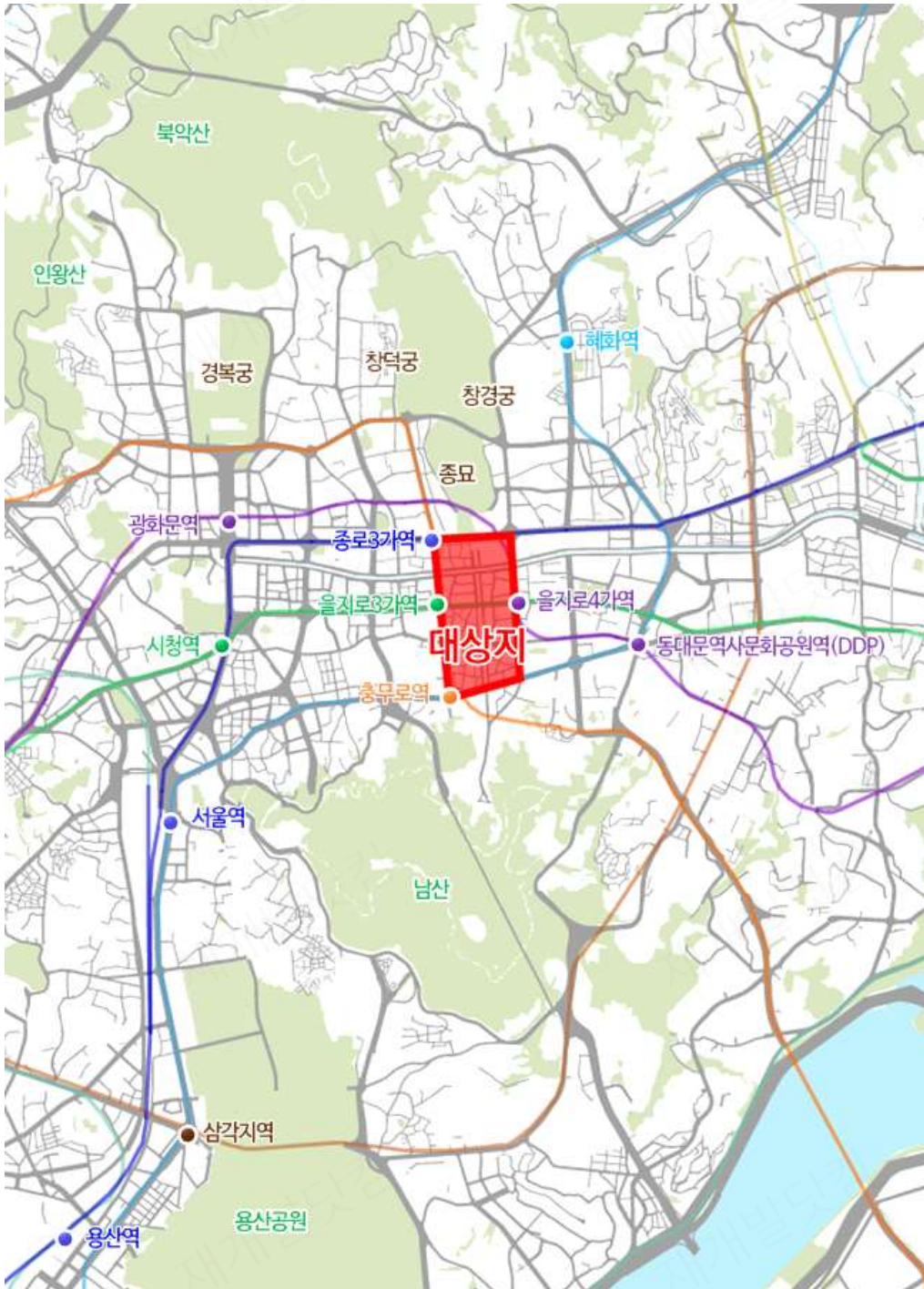
※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,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III. 구역 지정의 실효 사유와 실효일

- 실효사유 :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0조제1항에 의한 정비구역의 해제
- 실효일 : 고시 게재일

※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(<http://luris.molit.go.kr>)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■ 위치도



■ 촉진구역 해제도

